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시설에 공설묘지 등 추가>
■ 임의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73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시설에 공설표지 등 추가	3

I. 제안경위

2024년 9월 5일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및 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해당 1회용품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묘지 등에 헌화용으로 사용되는 꽃이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조화로서 합성섬유와 철심(중금속)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소각·매립 처리됨으로 인해 탄소배출량이 증가됨. 또한 햇빛에 3개월 이상 노출될 경우 풍화되어 미세플라스틱이 생성되면서 화학물질이 용출되는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이러한 플라스틱 조화의 환경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470개 공원묘지에서 연간 1,557톤의 조화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탄소 배출량은 4,304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설묘지 및 법인묘지, 국립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플라스틱 사용과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0조).

Ⅲ. 검토의견

1.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시설에 공설묘지 등 추가

개정안은 공설묘지·법인묘지·국립묘지를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u>경영하는 사업자</u> 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 ----- ----- <u>경영·운영하는 자</u>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묘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에서 그 종류를 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봉투·쇼핑백 등으로 정의하고(법 제2조제15호1), 시행령 별표1),

동법 제10조²⁾는 특정 시설 또는 업종의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제한 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현황]

업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목욕장업, 숙박업(50실 이상)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 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자료 : 환경부

개정안은 이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설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³⁾·법인묘지⁴⁾, 국립묘지⁵⁾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연천현충원
4. 국립4·19민주묘지
5. 국립3·15민주묘지
6. 국립5·18민주묘지
7. 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
 - 가. 국립영천호국원
 - 나. 국립임실호국원
 - 다. 국립이천호국원
 - 라. 국립산청호국원
 - 마. 국립괴산호국원
 - 바. 국립제주호국원
8. 국립신암선열공원

공원묘지 등에서 헌화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려는 취지임.

플라스틱 조화는 합성섬유, 철심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곤란하여 소각 또는 매립의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경상남도에 따르면 연간 경상남도에서 177.5톤, 전국에서 1,270톤⁶⁾의 플라스틱 조화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⁷⁾됨.

이에 개정안은 플라스틱 조화 폐기물의 발생을 저감하고 친환경적인 추모 문화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플라스틱 조화는 묘지 내에서 장기간 사용(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현행법상 일회용품과는 제품의 성격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법상 일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일회용 컵·접시·용기, 1회용 면도기·칫솔 등 한 번의 식사, 세면 등의 행위를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음.

둘째, 묘지 등은 고인을 추모하는 특수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현재

6) (산출 근거) 묘지별 매장구수 당 연간 900g의 조화(1년 평균 3~4회 방문 가정) 배출 추정

※ 법인묘지 및 공설묘지만 반영

7) 참고로, 1회용 컵의 판매량은 13만 3,548톤, 1회용 숟가락의 판매량은 1만 81톤, 1회용 젓가락의 판매량은 11만 3,235톤, 1회용 빨대의 판매량은 4,446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22)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와는 특성상 상이한 점이 있어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신설에 우선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음.

현재 일부 지자체(김해, 경남, 부산 등)에서는 공원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정책을 도입한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을 수행한 후 사회적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참고로, 국가보훈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도입 이전 유가족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국립묘지는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조화’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금지할 경우 발생하게 될 생화 관리를 위한 예산·인력 소요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6